

보도시점

2026.2.4.(수) 06:00
< 2.4.(수) 석간 >

배포

2026. 2. 3.(화)

산업부, 민관 합동으로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방안 논의

- 3자 합의 타결('25.12월)로 이사회 최종승인 전망
- 우리 업계 영향 점검 및 對EU 아웃리치 전략 모색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EU 지침

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4년 7월 발효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금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 K-ESG 가이드라인 마련 및 맞춤형 교육, ESG 컨설팅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등 (업계) 협력사 ESG 관리체계 구축 지원, 협력사 실사 대응 컨설팅 등

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하였다.

* '25년 11~12월,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견·중소 협력사 200개 대상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	책임자	과 장	윤선영 (044-203-4870)
		담당자	사무관	김규현 (044-203-4877)



참고 1

민관합동 간담회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 '26.2.4.(수) 10:30~12:00
- (장소) 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KITA BRIDGE (48F)
- (참석자) 산업부, 유관기관, 관련 업계 등 총15명
 -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주재), 신통상전략과장 등
 - (유관기관) KOTRA, 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 (업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 주요 내용

- EU CSDDD 개정안 최종 승인에 따라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업계 대응 전략 및 효과적인 아웃리치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 논의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고
10:30~10:35	(5분)	○ 모두 발언	신통상전략지원관
10:35~11:05	(30분)	○ 안건 발제 • CSDDD 개정안 주요내용 • 기업 인식도 실태조사 결과	KOTRA 산단공
11:05~11:55	(50분)	○ 자유토론 • 업계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 • 종합토의	참석자
11:55~12:00	(5분)	○ 마무리 발언	신통상전략지원관

참고 2

EU CSDDD 개정안 주요 내용

□ 실사 대상 범위와 공급망 범위



□ 실사 이행 절차



* 그림 - EU CSDDD Q&A 자료(KOTRA) 인용

□ 개정안 내용 비교

구분		기존 지침	개정안
적용 대상	기업	• 직원수 1,000명 매출액 4.5억 유로 이상	• 직원수 5,000명 매출액 15억 유로 이상
	시기	• '27.7까지 자국법 전환	• '28.7限 (1년 유예)
실사 의무	공급망	• 모든 협력사	• 위험 기반 접근 방식 (위험요인이 높은 영역만 모든 협력사)
	실사평가	• 매년 평가	• 5년마다 평가
	기후전환	• 기후 전환계획 의무 부담	• 기후 전환계획 의무 삭제
	계약종료	• 위반 협력사와 계약종료	• 위반 협력사와 계약 중단
위반시 제재	과징금	• 제한 없음	• 상한액 설정 (전세계 순매출액의 3%)
	민사책임	• EU 차원의 책임 부과	• EU 차원 책임 삭제 (개별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규율)